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869
----------	------

2021.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5. 채인묵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1. 10. 20.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1. 12. 1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채인묵 의원)

1. 제안이유

-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 제5호 신설)

-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방법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9조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범죄예방 관련¹⁾하여 서울시는 부서²⁾마다 각각 해당 예산사업³⁾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개정안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의 방법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침입범죄와 방법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한편,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범죄예방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수행하고 있고 방법시설 설치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개정안은 건축물의 방법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건축법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중임

2) 범죄예방 관련 사업부서, 소관조례

소관부서	조례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등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주택정책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등

3) 범죄예방 관련 202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30억원), 안심마을보안관(28억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안심귀가스카우트(38억 원),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31억 원) 등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16억원),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24억원) 등
자치경찰위원회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4억원),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1천만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국비 20억원) 등
주택정책실	미편성

- 다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범죄취약지역 중 특히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운영(총 224개소, '21년 8월 기준)하고 있는 현황(검토보고서 붙임1)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유형에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방범시설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수정안 제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u>범죄취약지역</u>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현행과 같음)	3. ----- <u>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u> ----- -----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종류에 대해 개정안은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안 제8조제5호),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안 제9조)은
- 침입범죄 외에도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점, 범죄취약지역 외에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를 삭제하여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리하면, 개정안은 범죄취약지역 등의 건축물에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	-----	-----

<p>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u><신 설></u></p> <p><u><신 설></u></p>	<p>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u>방법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u></p> <p>제9조(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u>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 <u>범죄를</u> -----</p> <p>제9조(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u>시장은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며 (안 제8조제3호),
-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 예방사업으로 확대함(안 제8조제5호, 안 제9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869
----------	------

제안일자 : 2021. 12. 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침입범죄 외에도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점, 범죄취약지역 외에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며 (안 제8조제3호),
-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 예방사업으로 확대한다(안 제8조제5호, 안 제9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범죄취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으로 한다.

안 제8조제5호 중 “침입범죄”를 “범죄”로 한다.

안 제9조 중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사업)</p> <p>3. <u>범죄취약지역</u> 도시환경디자인 사업</p> <p><신 설></p> <p><신 설></p>	<p>제8조(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사업)</p> <p>3. (현행과 같음)</p> <p>5. <u>방범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u></p> <p>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u>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u>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검찰청, <u>서울지방경찰청</u>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8조(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사업)</p> <p>3. ----- <u>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u> -----</p> <p>5. ----- <u>범죄를</u> -----</p> <p>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u>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1조(협력체계 구축)</p> <p>-----</p> <p>-----</p> <p>-----</p> <p>-----</p> <p>-----</p> <p>-----</p> <p>----- <u>서울특별시경찰청</u> -----</p> <p>-----</p>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3호 중 “**범죄취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u></p> <p>5. <u>“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u></p>
<p>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범죄취약지역</u> 도시환경디자인 사업</p> <p>4. (생략)</p> <p><u><신설></u></p>	<p>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u> ----- -----</p> <p>4. (현행과 같음)</p> <p>5. <u>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u></p>

<p>5. (생략) <u><신설></u></p> <p><u>제9조</u> (생략)</p> <p><u>제10조</u>(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검찰청, <u>서울지방경찰청</u>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u>제11조</u> (생략)</p>	<p><u>기 위한 사업</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u>제9조</u>(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방법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p><u>제11조</u>(협력체계 구축) ----- ----- ----- <u>서울특별시경찰청</u> ----- ----- --.</p>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